

수시 적성검사 통지서(국내)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면허번호			
검사기간			
검사장소			
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			

「도로교통법」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도로교통공단

인

유의사항

-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검사 기간 내에 검사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위 검사 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.